

농업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81호
------	-------

<p>2023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p>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11. 14.

2023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181호
----------	-------

제출연월일 : 2022. 11. 14.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실장

1. 제안이유

-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2. 출연개요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설립형태 : 비영리 재단법인
- 재단설립 : 2022. 9. 27.
- 출 연 금 : 700백만원 ('22년도 출연금 : 800백만원)
- 출연방법 : 현금출연
- 2023년도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소요액	도 비	시 비	
계		3,850	3,150	700	
인 건 비	인건비, 경상경비	1,947	1,877 (96%)	70 (4%)	교육·연수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 직원 인건비
운영경비	건물 유지관리 등 기본재산 유지관리비	1,298	668 (51%)	630 (49%)	수도광열비, 보험료, 라키비움 유물 및 도서 보존관리, 서버유지보수, 향온향습기 유지관리 등
사 업 비	재단 사업수행비	605	605	-	

3. 주요사업

-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
- 유교문화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외 교육 및 협력사업
-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보존
-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 국학 진흥기관 간 교류 및 협력사업
-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4조(충청남도, 논산시)

5.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조직현황 : 붙임1

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시설현황 :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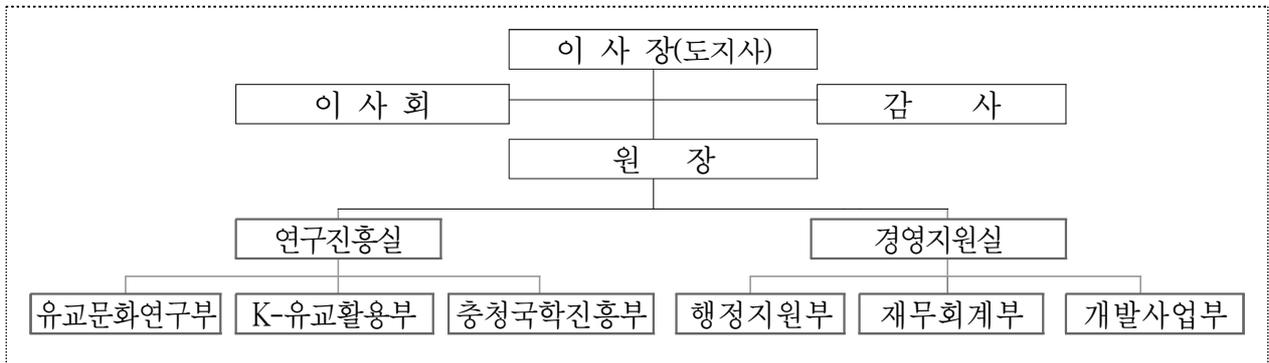
7.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붙임 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조직 현황

□ 재단법인 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중학길 10
- 시설규모 : 건축면적 2,619㎡ / 연면적 4,927㎡
 - 본관동 1개동(라키비움/수장고/업무공간 등), 한옥연수원 7개동
- 재단설립 : 2022. 9. 27.
- 조직현황 : 총 24명 (연구직 12, 관리직 7, 공무원 5)



□ 임 원 [이사장, 이사, 감사]

- 구 성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 이 사 회 : 법인 설립요건 구비를 위해 출범 전 구성

《 임원 선임 : 총 11명 (당연직 5, 선임직 6) 》

- 이 사 : 9명 (당연직 4, 선임직 5)
 - 이사장 : 1명 (당연직 1)
 - 이 사 : 8명 (당연직 3, 선임직 5)
- 감 사 : 2명 (당연직 1, 선임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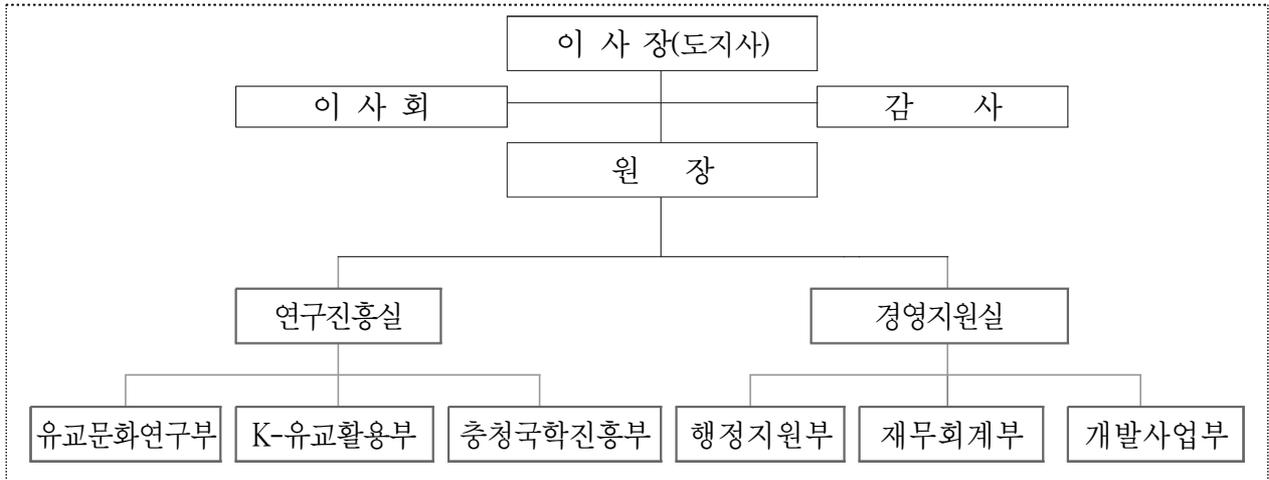
※ 구분 {
 당연직(5) : 이사 4명(도지사, 논산시장, 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 1명(문화유산과장)
 선임직(6) : 이사 5명, 감사 1명

□ 조직 규모

①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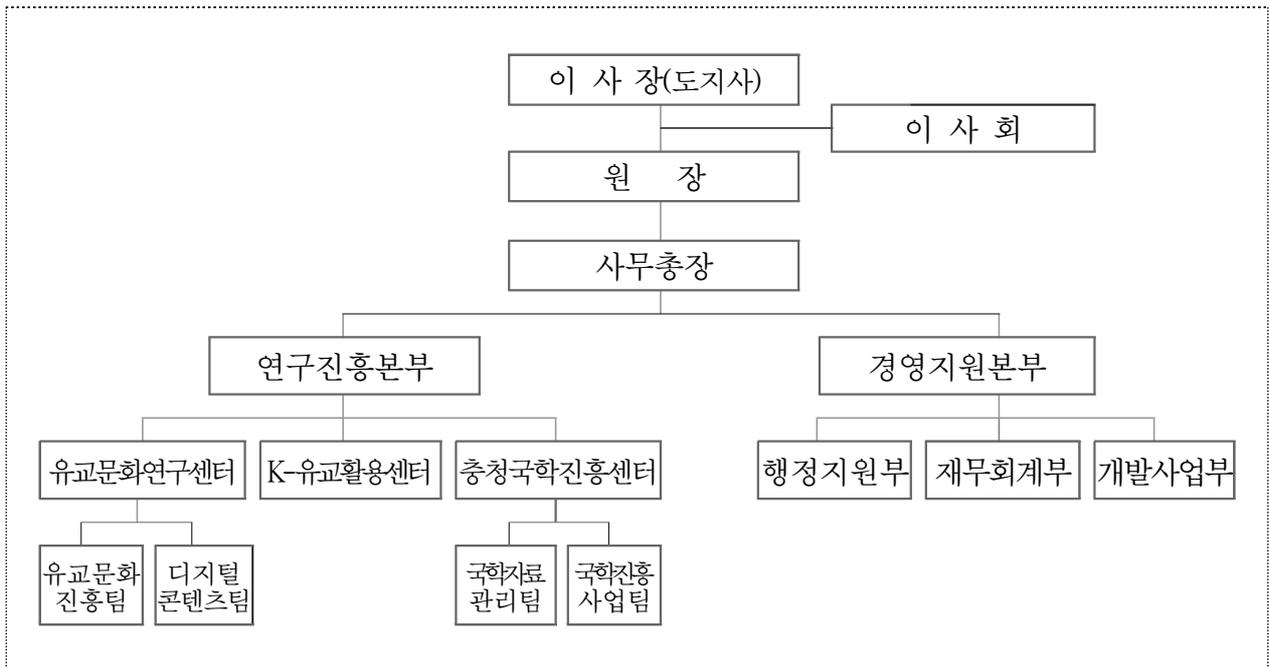
- 1단계('22년 ~ '24년) 2실 6부, 총 39명(일반직33, 공무원6)
 - 2실(연구진흥실, 경영지원실), 6부(연구 3, 행정 3) 구성

< 1단계 ('22년 ~ '24년) 조직도 >



- 2단계 ('25년 이후) 2본부, 3센터, 3부 총 49명(일반직41, 공무원8)
 - 운영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직 확대 운영

< 2단계 ('25년 이후) 조직도 >



② 업무분장

○ 1단계('22년 ~ '24년) 설립단계 부서별 업무분장

- 총 39명(임원 1, 연구직 18, 행정직 11, 시설직 3, 공무원 6)

구 분		인원(명)		주요업무
합 계		39		※ 이사장 제외
이사장		1	1	• 충청남도지사 역임
원 장		1	1	• 진흥원 운영총괄
준비단장		1	1	• 대외협력 및 자문 등
연구 진흥 실	유교문화 연구부	21 (실장 포함)	5 (연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지원 • 유교문화 연구 및 조사, 연구기획, 관리 • 학술지 발행, 학술용역, 학술대회 기획 및 개최 • 유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대외협력 • 해외소재 한국문화원 연계사업 개발
	K-유교 활용부		8 (연구 6, 공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반 활용사업 기획 및 유교문화진흥 콘텐츠 개발, 전시 기획, 운영 • 라키비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한옥 연수원 활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 DB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해외 교류 및 해외 K-유교 홍보 콘텐츠 개발 • 출판, 영상 및 디지털자료 개발, 제작, 활용사업
	충청국학 진흥부		7 (연구 6, 공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학자료 조사 수집 및 보존·유물관리 • 국학관련 연구기획 및 연구사업 발굴 • 고전국역 및 편찬 • 민간기록물 조사 및 수집·관리, 민간협력 • 유물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리
경영 지원 실	행정 지원부	16 (실장 포함)	7 (행정 6, 공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기획, 평가 • 이사회, 제규정, 행사운영 • 대외협력, 홍보, 교육, 복리후생
	재무 회계부		4 (행정 3, 공무 1) ※ 부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재무관리, 회계, 자산관리 • 지출, 계약, 결산, 출납관리 • e나라도움 보조금 시스템 관리
	개발 사업부		4 (시설 3, 공무 1) ※ 부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장 국비 사업 추진 • 건축, 토목, 조경, 방호/안전 등 시설 관리 • 전산, 보안 및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 • 시설물 방호 및 경비업무, 안내, 질서유지 등

○ 2단계("25년 이후) 설립단계 부서별 업무분장

- 총 49명(임원 1, 사무총장 1, 연구직 26, 행정직 8명, 시설직 5명, 공무직 8)

구 분		인원(명)		주요업무
합 계		49		※ 이사장 제외
이사장		1	1	• 충청남도지사 역임
원 장		1	1	• 진흥원 운영총괄
사무총장		1	1	• 진흥원 행정총괄
연구진흥본부	유교문화 연구센터	29 (실장 포함)	6 (연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지원 • 유교문화 연구 및 조사, 연구기획, 관리 • 학술지 발행, 학술용역, 학술대회 기획 및 개최 • 유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대외협력 • 해외소재 한국문화원 연계사업 개발
	K-유교 활용센터		12 (연구 10, 공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반 활용사업 기획 및 유교문화진흥 콘텐츠 개발, 전시 기획, 운영 • 라키비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한옥 연수원 활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 DB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해외 교류 및 해외 K-유교 홍보 콘텐츠 개발 • 출판, 영상 및 디지털자료 개발, 제작, 활용사업
	충청국학 진흥센터		10 (연구 9, 공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학자료 조사 수집 및 보존·유물관리 • 국학관련 연구기획 및 연구사업 발굴 • 고전국역 및 편찬 • 민간기록물 조사 및 수집·관리, 민간협력 • 유물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리
경영지원본부	행정 지원부	18 (실장 포함)	5 (행정 4, 공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기획, 평가 • 이사회, 제규정, 행사운영 • 대외협력, 홍보, 교육, 복리후생
	재무 회계부		4 (행정 3, 공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재무관리, 회계, 자산관리 • 지출, 계약, 결산, 출납관리 • e나라도움 보조금 시스템 관리
	개발 사업부		8 (시설 5, 공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장 국비 사업 추진 • 건축, 토목, 조경, 방호/안전 등 시설 관리 • 전산, 보안 및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 • 시설물 방호 및 경비업무, 안내, 질서유지 등

□ 건립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중학길 10
- 총사업비 : 280억원(국비 84, 도비 98, 시비 98)
- 사업기간 : 2014 ~ 2021(8년간) ※ 준공승인 : '22. 1. 10.
- 건립 및 운영 : <건립> 논산시, <운영> 충청남도

□ 연차별 집행현황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28,000	3,313	667	667	3,333	7,236	12,784	
국 비	8,400	980	200	200	1,000	2,170	3,850	
도 비	9,800	1,166.5	233.5	233.5	1,166.5	2,533	4,467	
시 비	9,800	1,166.5	233.5	233.5	1,166.5	2,533	4,467	

□ 시설 규모

구 분	내 용			
면 적	건축면적 : 2,656.32㎡ / 연면적 : 4,963.83㎡ / 대지면적 : 36,786.83㎡			
건 물	본관동(지하 1층, 지상 2층) 1개동, 연수원 7개동			
본관동 (1개동)	지하 1층	연구·사무	원장실, 연구실, 행정실, 회의실 등	2,138㎡
		수장·정리·보존	수장고, 보존처리실, 유물정리실 등	
		기계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	
	지상 1층	전시·문화복합	라키비움, 기획전시실 등	1,845㎡
		회의·행사	대강당, 소강당, 다목적실 등	
	지상 2층	체험·홍보·휴식	홍보실, 청소년 체험관, 북카페 등	355㎡
연수원 (7개동)	단독형 - A : 1채(4명)		58.8㎡	
	단독형 - B : 4채(24명 / 1채당 6명)		294.12㎡	
	단독형 - C : 1채(4명 / 장애인동)		65.5㎡	
	단독형 - D(관리동) : 1채(식당, 휴식공간)		169㎡	
주 차	총 99대(장애인 4대, 경형 12대, 일반 77대, 대형 6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지원)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논산시)**

제4조(재정지원) ① 도와 시는 진흥원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며, 이 경우 도는 관련법령에 의거 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